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 12. 7)

1. 심사 경과

가. 2004. 11. 29 : 사천시장 제출

나. 2004. 12. 2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67호)

다. 2004. 12. 7 :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가. 제안 이유

2005년부터 음식물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을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고장에 신속대응하고 최적운전과 처리효율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극소화시켜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환경기초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

나. 근거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다. 현황

1)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위 치 : 사천시 사등동 114번지 일원
- 용 량 : 20톤/일(하수병합)
- 사 업 비 : 1,270백만원(국비 381, 도비 178 시비 711)
- 사업기간 : 2003. 12. 23 ~ 2004. 1. 19

2) 연간 예상 운영비 : 211,377천원

※ 청소사무 원가산정 및 비용·편익분석 연구최종보고서에 의함

3. 위탁운영의 효율성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하수병합 처리시설로 처리수 전량이 하수처리장 소화조로 유입되도록 처리시설 계통 체제가 연계되어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및 예산절감

가. 직영관리와 위탁운영의 비교

구 분	시 직 영 관 리	위 탁 관 리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기술인력 확 보 면	○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적정운영 곤란	○ 기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업체가 통합관리 할 경우 전문기 술력에서 다소 떨어지나 하수병 합처리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기 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원감축 이 가능하고 산출된 총괄원가보다 낮은 금액과 환경기초시설 통합 관리 기능에 효과적임
시 설 물 의 유지관리면	○ 고장 및 보수에 신속 대응 불가	○ 하자나 고장에 신속 대응 가능 ○ 시설물 수명연장 ,예산절감
처 리 효 율 면	○ 기술 부족으로 운영관리의 효율성 저하로 민원야기	○ 최적운전과 처리효율 안정적 공급 가능
근 무 관 리 면	○ 혐오시설 근무의식에 의한 근무자의 사기 저하	○ 시설의 연계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탄력성
예 산 관 리 면	○ 일정한 예산에 맞추어 운영 하므로 예산낭비 요인 발생	○ 처리시설의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예산절감

나. 직영과 위탁관리 예상 관리인원 비교

○ 시 직영관리(5명)----- 소장1, 기계1,전기1,환경1,사무직1
○ 통합(하수)위탁관리(3명) ----- 기계1,전기1,환경1

※ 위탁운영비 전문인력 투입으로 운영인원 최소화

4. 위탁의 범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위탁운영하고 약품비, 동력비, 수선비 및 법령에 의한 검사비등은 “시” 에서 부담하는 부분위탁
--

○ 운영 전부위탁과 부분위탁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운영전부 위탁	○ 업무의 간소화	○ 전부위탁시 부가가치세 과다소요 (운영비용 및 이윤 합계의 10%) ○ 약품비, 수선비등의 통제불가로 예산 낭비 요인
부 분 위탁	○ 예산의 절감(부가가치세) ○ 약품대등의 통제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 업무의 복잡

5. 금 후 계 획

가. 수탁기관의 선정

-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나.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6. 동의를 구하는 사항

우리시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위탁토록 동의를 구함.

7.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설치한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는 “2005. 1. 1 부터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시 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04. 1. 19, 1일 2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사등동 114번지 일원에 설치완료 하였고, 5월부터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 2005. 1. 1 부터 전면시행 하는데 대비해 오고 있음.
-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 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인접해 있고 이

시설은 하수병합 처리시설로 처리수 전량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로 유입되도록 처리시설 계통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민간위탁 운영시 위법한 사항은 아님.

8.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성재윤 위원	○ 일반주택가에도 음식물폐기물 수거함을 도로변에 비치하는 것을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없는지?	환경보호 과장 신태영	○ 아파트처럼 수거함을 설치해 놓으면 상가나 음식점에서 내다 버릴 것이 우려되어 일단 봉투를 이용해 보고 주택가에 대해서는 중간 수집통을 비치할 계획임
이문상 위원	○ 연간운영비가 2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위탁할 때와 직영할때의 예산관리 현황을 비교해 보았는지?	환경보호 과장 신태영	○ 금액으로는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산술적으로 운영인력 2명 과 그 외 경비인력 2명이 절약됨.
김현철 위원	○ 위탁업체 선정 시 특혜시비가 없도록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기 바람	환경보호 과장 신태영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겠음.
최갑현 위원	○ 약품구입시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부가세를 부담하는데 우리시에서 별도로 구입 할 때는 부가세 10%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 바람.	환경보호 과장 신태영	○ 검토해 보겠음.

9. 토론 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1. 소수 의견 : 없음